

Hae Won Shin, esq. (2 pages)

Jean Chung

보낸 사람: Jean Chung <jean@bettercomm.com>
 받는 사람: Tae-hui Kim <thkim20@hotmail.com>; 김민영-kunsan uni <mykim@kunsan.ac.kr>;
 edward chang <edch@pop.ucr.edu>; <Haanlaw@aol.com>; Jean Chung
 <jean@bettercomm.com>; Keith <kkint90@hotmail.com>; Kenny
 <haanlaw@hotmail.com>; Lisa2 <lisajyang@hotmail.com>; WS
 <wshan@koreatimes.com>
 보낸 날짜: 2001년 9월 21일 금요일 오후 12:03
 제목: Yonhap News-Marshall's Remand Decision

연합뉴스

미 연방법원, 한인징용소송 주법원에 배당

[주요뉴스, 세계] 2001.09.21 (금) 17:30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은 한인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콘수엘로 마살 연방법원 증부지원 판사는 19일 판결결정문을 통해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쓰이가 요청한 한인징용소송의 연방법원 이관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소송이 제기됐던 LA 카운티 민사지법에 환송했다.

LA 등에 거주하고 있는 권오연(81), 황정기(79), 안성균(78)씨 등 한인 징용피해자 8명은 지난 2월27일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일측은 1951년 미일강화조약 등을 내세워 이 소송이 미일 정부의 정치외교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살 판사는 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닌 한국의 징용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빚금을 청구한 것은 정치외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민사지법은 권씨 등의 집단소송을 지난 15일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의 정재원(79)씨 소송 기각요청을 비슷한 이유로 거부한 피터 릭트만 판사에게 배당했다.

원고측 공동변호인단의 김태희 변호사는 "릭트만 판사가 이 케이스를 맡았기 때문에 성씨 케이스처럼 일측의 기각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9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법(일본강제징용손해배상특례법)은 2차 대전중 독일 나치와 일본 등 동맹국들의 강압적 행위에 의해 강제노동을 한 캘리포니아 거주 피해자나 그 자손들이 주법정에서 국가와 기업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오는 2010년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본 워키 판사는 19일 주법이 "외교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환인과 중국인 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가미마 등 일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7건과 필리핀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정재원씨 공동변호인 한태중 변호사는 "같은 연방법원이더라도 지원과 판사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이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배리 피셔 변호사는 "결국 징용피해자들의 권리는 주 및 연방 항소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